

# 부천옥길 S1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♠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현장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)
- ♠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·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♠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공급대상 및 일정

■ 공급대상 :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·옥길동·계수동 일원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S1블록  
공공분양주택 1,318호

블록	전용(m <sup>2</sup> )	건설호수	입주	비고
S1BL	59	253	' 17. 12(예정)	
	74	430		
	81	12		
	84	623		

※ 부천옥길지구 개요

- 위 치 :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·옥길동·계수동 일원
- 사업면적 : 1,330천m<sup>2</sup>(402천평)
- 건설호수 : 9,357호
- 사업기간 : 2009. 12월~2015.12월

## ■ 일정

구 분	일 자	비 고
입주자모집공고	2015. 6. 19(예정)	공사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lh.or.kr">http://www.lh.or.kr</a> )
접수일	2015. 6. 26(예정)	분양홍보관 방문접수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당첨자발표	2015. 7. 17(예정)	공사홈페이지
계약체결	2015. 8. 24~26(예정)	분양홍보관

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조건 : 미 정 [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(2015. 6. 19 공고예정) 참조]

## 2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### ■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[2015. 6. 19(예정)]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자체 철거민	청약통장 필요없음
• 일본군위안부피해자, 북한이탈주민, 우수기능인,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	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※ 무주택세대구성원 :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
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### 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(신청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자
-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[당첨일로부터 3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)]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### 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신청주택의 동·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 하며, 미계약, 미신청 동·호 발생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함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,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·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

## 3. 신청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[2015. 6. 19(예정)] 이후 발급분에 한함
- 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

## ■ 구비서류(각 1통)

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,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(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)

구분	구비서류	비고
본인 신청시	① 특별공급신청서	• 공사 소정양식, 신청일에 LH 부천주택홍보관에 비치
	② 주민등록표등본	• 무주택세대구성원(신청자)의 주민등록표등본
	③ 도장	• 무주택세대구성원(신청자)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
	④ 신분증	• 신청자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	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 [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]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www.apt2you.com * 제출대상자 :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
	추가 제출	⑥ 가족관계증명서
	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
배우자 신청시	⑦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
제3자 신청시	본인 신청시 필요서류(①~⑦)	
	⑧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	
	⑨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	
	⑩ 신청자의 인감도장	
	⑪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	

## 4. 기타사항

-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[2015. 6. 19.(예정)]에 공사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)
- 자세한 일정, 분양가격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([www.LH.or.kr](http://www.LH.or.kr))에 공고[2015. 6.19(예정)]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·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)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 공급(다자녀 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
-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(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)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, 동·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.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**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**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5. LH 부천주택홍보관(입주자모집 공고일 개관 예정)



### ■ 주 소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(계수동 57)

### ■ 찾아가는길

- 지하철 1호선(경인선) 역곡역 남부출구 하차 후 일반버스 10번 탑승(옥길동 종점 하차)